

[유효기간: 2024.5.16-상품개편 혹은 판매종료시 까지]

# 외국환거래 상품설명서

본인은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환 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20 . . . . . (서명/인)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환거래약정서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및 수출입약정서가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및 외환거래약정서가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##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- 상품명 : 매입외환, 외화지급보증
- 매입외환 :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따른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 등을 은행이 매입하여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거래
- 신용장 방식 :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등을 매입하는 거래
- 무신용장 방식(D/P, D/A, CAD, COD 등) : 수출계약서에 의한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 등을 매입하는 거래
- 수출대금채권(O/A) 방식 :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거래
- 외화지급보증
- 수입신용장 발행 : 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발행하는 거래
- 보증신용장(기타 외화지급보증서 등) 발행 : 수익자에 대하여 고객의 채무(계약) 불이행시 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발행하는 거래

## 2 외국환거래 관련 비용

- 환가료 : 외국환거래에서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조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기간에 따라 환가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일람불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  
[매입금액 x 매입일의 일람불 환가료율 x 표준우편일수/360]
-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  
[매입금액 x 매입일의 기간별 환가료율 x 기간일수/360]  
(※이종통화의 경우, 국제관례,상관습에 따라 360 혹은 365일로 계산합니다)
- 지급보증료 : 수입신용장 발행·인수, 신용장 발행 또는 기타 외화지급보증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
- 발행시 : 발행수수료  
[개설금액 x 매매기준율 x 발행수수료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 360]
- 인수시 : 인수수수료  
[인수금액 x 매매기준율 x 인수수수료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 360]
- 기타 지급보증 : 기타 지급보증수수료  
[보증금액 x 매매기준율 x 보증요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360]

## 3 수수료 및 부대비용

- 취급수수료
-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: ( /건 )
- 신용장 개설수수료 : ( 차등 적용 )
- 부대비용
- 우편료 : 우편 도착지에 따라 차등 적용
- 전신료 : 거래 업무 또는 전신문 분량에 따라 차등 적용
- 기타 : 외국환거래에 있어 해외은행의 업무처리 및 고객의 거래 형태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4 환가료 등 납입방법

- 외국환거래시 선취를 원칙으로 합니다.

## 5 외국환거래 상환방법

- 건별 만기일에 일시 상환(단, 보증신용장 등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환)
- 기타 상환방법은 수,출입거래약정서 참조

## 6 유의사항

- 외국환거래의 제한
- 당행의 연체 대출금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 보유자,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, 신용도판정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외국환거래를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- 아래의 경우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합니다.
- 외국환거래 상환방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대외에서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
- 외국환거래 상환방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
- 환가료 및 수수료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

- 외국환거래 관련비용(환가료, 지급보증료, 매입이자) 및 수수료 등은 상담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기타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670-5566)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